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125
----------	------

제출년월일 : 2019년 10월 16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개정이유

공립대학으로서의 경쟁력 제고, 대내외 협상력 강화 및 대학혁신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 등을 위해 서울시립대학교에 부총장제를 도입하고, 총장 직속기구로 미래혁신원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울시립대에 부총장제를 도입함(안 제3조의4)

- (1) 총장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교학부총장과 대외협력부총장을 각각 1명씩 둠.
- (2) 부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총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학부총장, 대외협력부총장 순으로 직무를 대행함.
- (3) 부총장의 임명방법, 직무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칙으로 정함.

나. 서울시립대에 총장직속의 미래혁신원을 설립함(안 제7조의2)

다. 부총장 직위 신설에 따라 부총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정보공개 대상에 포함하도록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를 개정함(안 부칙 제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

나. 예산조치: 협의완료

다.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별도 첨부

(2) 입법예고 (2019. 9. 26. ~ 10. 7.) 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별도 첨부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4(부총장) ① 총장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교학부총장과 대외협력부총장을 각각 1명씩 둔다.

② 부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총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학부총장, 대외협력부총장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④ 부총장의 임명방법, 직무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7조의2 중 “인권센터를”을 “인권센터 및 미래혁신원을”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 중 “총장·학장·처장”을 “총장·부총장·학장·처장”으로 한다.

신 · 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제7조의2(직속기관) 대학교에 직속 기관으로 <u>인권센터</u>를 둔다.</p>	<p><u>제3조의4(부총장) ① 총장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교학부총장과 대외협력부총장을 각각 1명씩 둔다.</u></p> <p><u>② 부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u></p> <p><u>③ 총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학부총장, 대외협력부총장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u></p> <p><u>④ 부총장의 임명방법, 직무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u></p> <p>제7조의2(직속기관) ----- -----<u>인권센터 및 미래혁신원</u> 을 -----.</p>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부총장제 및 미래혁신원 신설에 따른 소요경비
 - ▶ 서울특별시립대학교 부총장 2명, 미래혁신원장 1명 보직수당 추가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관련규정〉

제3조 ① 의원·위원회·시장·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부총장제 및 미래혁신원 신설에 따른 소요경비 발생이 발생되나, 예상되는 비용추계액이 연평균 5억원 미만으로 추정

4. 작성자

- 조직담당관, 행정6급, 박지애 주무관(T.2133-6748)